

산학협력중점교원 업적평가규정(3-6-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원인사규정」에 의한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업적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대상) 이 규정은 산학협력중점교원(이하 “산학교원”라 한다.)과 산학교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평가의 예외인정) 평가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평가 기간 중 4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2. 평가 기간 중 4개월 이상 해외 연수 또는 공무에 의한 출장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3. 평가 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산학교원
4. 처장급 이상의 보직을 수행하는 산학교원

제4조(평가의 원칙) 산학교원업적평가는 산학교육, 산학연구, 산학봉사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기준) ① 산학교원업적평가는 산학교육형, 산학연구형, 산학봉사형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평가하되, 세부 기준은 별첨 1과 같다.

1. 산학교육형 : 산학교육 50, 산학연구 30, 산학봉사 20
2. 산학연구형 : 산학교육 30, 산학연구 50, 산학봉사 20
3. 산학봉사형 : 산학교육 30, 산학연구 20, 산학봉사 50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비전임 산학교원(산학전문교수)은 별첨 2의 기준(3개 영역)에서 2개 영역을 본인이 선택하여 평가하되, 비율은 50:50으로 평가한다.

제6조(평가대상기간) 업적 평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산학교원업적평가위원회) ① 산학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본 대학교의 보직교수 또는 산학교원 중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교원 업적평가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
2. 산학교원 업적평가 기재사항 확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산학교원 업적평가 우수교원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학교원 업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평가절차) ① 산학교원은 평가 대상 기간의 업적에 대하여 소정의 양식에 따라 산학

- 교원업적평가보고서 및 증빙 서류를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산학교원 업적평가 자료에 대하여 업적평가를 시행한 후 해당 교원에게 통보한다.
- ③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결과를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에서는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재심사 한 후, 재심사 결과를 해당교원에게 통보하고 3월말까지 총장의 재가를 받아 결과를 활용한다.

- 제10조(업적평가 결과 활용)** ① 총장은 매년 1년간의 업적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산학교원 중 상위 10%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교원을 선정한 후 해외 연수 대상자 선정 또는 연봉의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최저 업적평가 점수에 미달된 산학교원에 대해서는 승진 및 재임용 등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업적평가 결과는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제11조(기타)** ① 총장이 인정하는 보직 활동 또는 공로가 인정되는 활용 등으로 대학발전에 기여도가 클 경우, 이를 업적평가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산학교원인사규정, 교원 업적평가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2월 28일부로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신설이전에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된 경우에도 이 규정에 의해 업적평가를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별첨 1> 영역별 업적평가 기준표

1. 산학협력 교육형

: 교육형 50% + 연구형 30% + 봉사형 20%

<배점 1%당 0.1점>

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기준	상한	인정범위
강의	강의평가 점수	1-2학기평균(10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무처 인정 실적
	강의공개	건당 × 20%	50%	
	티칭포트폴리오	건당 × 10%	50%	
	교수학습법 프로그램 및 세미나 참여	건당 × 10%	20%	
	자격증(KPP) 관련 강좌	건당 × 10%	50%	
현장 실습 지도	단기제 현장실습	방문건수 × 1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지원센터 인정실적
	학기제 현장실습	방문건수 × 20%	100%	
	현장견학(産in學 현장수업)	인솔건수(20명 이상)×20%	150%	
캡스톤 디자인 교육	교과목 운영	과목 수 × 2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계획서 제출 산업체 참여인 경우 : 2배 인정
	교내경진대회 참여/입상	팀 × 20/50%	50%/100%	
	전국규모 경진대회 참여/입상	팀 × 30/100%	100%/200%	
산학 연계 인력 양성	산업체 맞춤형 교과목 개설	건당 × 2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학협력 교육관련 강의 (재학생, 재직자)를 목적으로 교재 개발 해당부서(산학협력단, ACE 교육력강화센터 등) 인정 실적
	현장수업연구회,기술연구회 운영	회당 × 20%	100%	
	국책사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건당 × 50%	100%	
	산업체 재직자 교육	건당 × 100%	100%	
창업	학생창업동아리 지도	건당 × 1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도실적 증빙 제출 학생 졸업 후 3년 이내 인정 강의계획서 제출 관련 교과목, 특별지도, 동아리를 지도한 팀에 한하여 인정
	학생창업 실적	건당 × 50%	100%	
	교과목 운영	50% × 과목수	100%	
	교내 경진대회 입상	50% × 팀	100%	
	전국 규모 경진대회 입상	100% × 팀	200%	
취업	취업을 위한 산업체 방문	건당 × 2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인재개발원에 보고된 실적에 한함
	취업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개발	명당 × 10%	100%	
	취업상담	명당 × 5%	100%	
	취업실적	명당 × 50%	300%	
	모의면접	명당 × 10%	100%	
계약	계약학과 유치	200%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학과 유치와 운영 중복 불인정

학과	계약학과 운영	100%		▪ 총점 범위 내에서 책임자가 배분
----	---------	------	--	---------------------

1. 강의

가. 강의 평가 점수

- 강의 평가는 당해연도 2개 학기 강의 점수의 평균으로 평가한다.
- 15명 이상의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을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학정원이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강의 공개 · 티칭포트폴리오 · 자격증(KPP) 운영

- 교무처 근거자료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강의 공개는 한 학기 한 과목만을 인정하며, 한번 인정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 티칭 포트폴리오는 e-portfolio 시스템에 등록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e-portfolio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것도 인정한다.
- 자격증(KPP)는 정규학기 또는 방학 중 실시한 모든 과목을 인정한다.

다. 교수학습법 프로그램 참여

- ACE교육력강화센터 추진하는 교수법 프로그램 참여 실적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2. 현장실습 지도

-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자료만을 근거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교원이 관련 기업체, 연구기관 등을 방문하여 산업체 인사(또는 현장 실습 참여 학생)에게 교원의 경험 또는 기술에 관련된 내용을 직접 교육, 지도한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 학생 지도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현장실습지도는 증빙자료(협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관련 기자재가 현장에 있지 않거나 교육장소가 현장에서 적절치 아닐 경우 제 3의 장소에서 교육한 경우도 인정 가능하다.
- 현장 견학 인솔은 최소 20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여야 한다.

3. 캡스톤 디자인

-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은 학과별로 운영되고 있는 설계과목을 말한다.
-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개발은 설계 과목에서 한 학기 동안 진행되어야 할 교재를 개발하는 경우 인정한다
- 캡스톤 디자인 지도를 통하여 학생의 작품 설계 및 구현을 지도하여 교내외 경진대회에 참여 또는 수상한 실적에 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한다.

4. 산학연계인력양성

가. 산업체 맞춤형 교과목 개설(코디네이터)

- 산업체와 협약 하에 개설한 분담 교과목만을 인정한다.

- 분담강의는 2명 이상의 교수가 분담하여 진행하는 학부과정의 이론 및 실습 강의를 말한다.
-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 한 학기동안 분담 강의 형식으로 교과목을 운영하며, 분담 강의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괄 관리 감독한다.

나. 현장수업연구회,기술연구회 운영

- 학과별 · 대학별 세미나를 하되, 3인 이상인 경우만을 인정한다.
- 주제 및 내용이 산학협력을 통한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 근거 자료로 회의록사본 뿐만 아니라, 세미나 내용, 결과보고서(반영 여부와 그 내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도구 개발, 아이디어 제공 등 수업개선 실적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반영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교내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적으로 해당 사업단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 산업체 재직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적으로 해당 사업단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5. 창업

가. 창업 동아리 지도 및 학생창업 실적

- 신설된 창업 동아리는 동아리가 신설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 학기 이상 활동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연도로 인정한다.
- 창업 동아리는 창업, 경진대회 수상 등 동아리 실적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창업 동아리 지도교수로 교무처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한다.
- 학생창업실적은 사업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경우에 인정한다.

나. 창업 교과목 운영 및 경진대회 입상

-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현장 실무형 강의로 산업체 전문가와 70:30비율로 운영 과목에 한한다.
- 창업교육센터에서 인정하는 교과목으로 한정한다.

6. 취업

가. 취업을 위한 산업체 방문

- 학생 취업 및 현장실습처을 위한 가족회사 발굴로 산학취업드림팀에서 인정한 실적에 한한다.

나. 취업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개발, 취업실적

- 취업특강, 취업 교육은 20명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 인정하며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 외부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도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취업 상담 실적은 창의인재개발원에서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

- 취업실적은 학생을 직접 취업시킨 교수에게 점수를 부여하며, 추천서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의 면접 지도는 창의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모의면접 프로그램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7. 계약학과

- 산업체와 연계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한 경우를 말하며 교학처에서 인정한 실적으로 한다

2. 산학협력 연구형

: 교육형 50% + 연구형 30% + 봉사형 20%

<배점 1%당 0.1점>

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기준	상한	인정범위			
산학협력 관련 국책사업 유치 및 운영	30억원 이상/년		책:250% / 참:200%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학협력단 인정 실적 			
	20억원 이상/년		책:220% / 참:190%					
	10억원 이상/년		책:200% / 참:170%					
	7억원 이상/년		책:170% / 참:150%					
	5억원 이상/년		책:150% / 참:130%					
	3억원 이상/년		책:130% / 참:100%					
	0.5-1억원/년		책:100% / 참:80%					
산학협력 관련 국책사업 기획 참여	30억원 이상/년		책:150% / 참:140%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학협력단 인정 실적 			
	10억원 이상/년		책:140% / 참:120%					
	7억원 이상/년		책:120% / 참:100%					
	5억원 이상/년		책:100% / 참:70%					
	3억원 이상/년		책:70% / 참:50%					
	1억원 이상/년		책:50% / 참:40%					
교원 창업	교원 창업		200% / 건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에 한하여 창업지원단 인정 실적 			
	기술 지주 회사 설립		200% / 건					
특허/ 신기술 등	국제특허출원		건당 200%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학협력단 인정 실적 			
	국제특허등록		건당 300%					
	국내특허출원		건당 100%					
	국내특허등록		건당 200%					
	실용신안, 의장평가, 프로그램 등록		건당 50%	100%				
	신기술, 신제품인증, 디자인 등록		건당 50%					
	기타 지적재산권 등록		건당 30%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세부 평가 항목	배점기준	상한	세부 평가 항목	배점기준	상한		
산업체 기술 개발 / 지도	기술 이전		50만원 당 25%	제한 없음	기술 이전		100만원 당 25%	제한 없음
	기술·경영자문		건당 10%	100%	기술·경영자문		건당 10%	100%
	장비 이용추천		100만원 당 20%	200%	장비 이용추천		100만원 당 20%	200%
산업체 공동 연구	연구비 수주액 50만원 당 10%		제한 없음	연구비 수주액 100만원 당 10%		제한 없음		
교외 연구	연구비 수주액 250만원당 10%		200%	연구비 수주액 500만원당 10%		200%		
논문 (최대 150%)	Science, Nature, Cell		500%	Science, Nature, Cell		500%		
	SCI, SSCI, A&HCL		300%	SCI, SSCI, A&HCL		300%		
	국외전문학술지, SCOPUS		250%	SCIE, Index edicus, SCOPUS		250%		
	국외일반학술지		200%	국외일반학술지		200%		
	학진등재지		200%	학진등재지		200%		
	학진등재후보지		150%	학진등재후보지		150%		

1. 국책사업 유치 및 참여

가. 산학협력 관련 국책사업 유치 및 운영

- 다년간 사업일 경우 매년 반영하며 유치자와 참여자에게 비율로 정한범위에서 인정한다.
- 사업규모는 대학의 대응자금 및 현물은 제외한다.
- 2개 이상의 사업 유치 시, 사업 별 취득 점수는 합산 적용한다.
- 집단사업의 경우로 한정하며 한다.

나. 산학협력 관련 국책사업 사업기획 참여

- 사업규모는 신청 시 총사업비를 말한다. 단, 대학 대응 자금 및 현물은 제외한다.
- 사업기획을 통하여 사업의 유치가 확정된 경우는 “산학협력관련 사업의 유치” 실적으로 평가 전환한다.
- 최소 1건 이상 집단사업 의무로 한다.

2. 교원 창업

- 창업의 경우는 매출이 3개월 이상 꾸준히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사업자 등록증만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기술지주 회사 설립은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특허, 신기술

- 국내·외 특허의 출원 및 등록은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실용신안, 신제품인증, 디자인 등은 등록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발명자가 다수인 경우 인정비율은 $1/n$ 으로 한다.

4. 산업체 기술개발 및 지도

- 교원 또는 직원이 아이디어 또는 연구 성과물을 외부에 이전함으로써 산학협력단에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기술이전 수혜액은 계약당시 총액으로 하며 계약 당해연도 평가에만 해당하며, 적용 연도는 기술이전 비용이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 교원이 기업체를 방문하거나 기업관계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교수의 아이디어 또는 기술에 관련된 자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단, 소정의 자문료가 산학협력단 통장에 입금된 경우에 한한다.
- 자문 내용이 산학협력단에 연구계약서 또는 보고를 통하여 인지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 기술지도 내용이 산학협력단에 연구계약서 또는 보고를 통하여 인지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 대학내 공용장비센터의 장비이용률 산업체와 연계한 실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5. 산업체 공동연구

- 순수 산업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산학협력단에서 인정한 실적으로 한다.
- 연구비 수혜액은 계약당시 본인 수주의 연구비 총액으로 하며 계약 당해연도 평가에만 해당하며, 적용 연도는 연구비가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 세부책임자의 연구비는 세부책임자에게 입금된 연구비만 점수로 계산한다.
- 공동연구의 경우 : 연구책임자 : $2/(n+1)$, 공동연구자 : $1/(n+1)$.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 : $1/n$

6. 교외 연구

- 5번 항목의 산업체 공동연구를 제외한 정부, 지자체, 연구소 등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교내연구는 제외한다.
- 연구비 수혜액은 계약당시 본인 수주의 연구비 총액으로 하며 계약 당해연도 평가에만 해당하며, 적용 연도는 연구비가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 세부책임자의 연구비는 세부책임자에게 입금된 연구비만 점수로 계산한다.
- 점수는 세부책임자만 인정이 된다.

7. 논문

- 국제저명학술지(ISI 등재 학술지)란 SCI, A&HCI, SSCI에 등재된 학술지를 말한다.
- 국외학술지란 국제저명학술지(ISI 등재 학술지) 및 SCIE, Index Medicus 등재 학술지에 포함되지 않는 국외학술지를 말한다.
- 일반학술지란 본 대학 「연구비지급규정」에서 정의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학술단체연합회, 대한의학회에 가입된 회원학회 및 이에 준하는 학회를 말한다.
- 학술논문 첫 페이지 상단에 기재된 명단은 연구보조원을 불문하고 공동연구원으로 인정하여 합산 평가한다.
- 인정 비율은 단독연구인 경우 1, 공동연구인 경우 연구책임자는 $2/(n+1)$, 공동연구자 : $1/(n+1)$,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 : $1/n$ (단, 연구참여자가 10명 이상의 경우 $1/10$)
- 연구책임자는 주저자(first author)와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말한다.
- 논문의 경우에는 산학협력형을 선택한 경우 인정 범위는 최고 150%를 초과할 수 없다.

3. 산학협력 봉사형

: 봉사영역 50% + 교육영역 30% + 연구영역 20%

<배점 1%당 0.1점>

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기준	상한	인정범위
교외봉사	학회 및 기술 활동	산학협력 관련학회 및 위원회 개최	50%/건	200%	인사팀 및 산학협력단 인정 실적
		산업체 외부 특강	25%/건		
		산학협력 EXPO 활동	50%/건		
	가족회사	가족회사 유치	30%/건	150%	산학협력단 인정 실적
		기업연구소 유치	50%/건		
	산학연계	산업체 파견활동 (교수현장학기제)	50%/월	200%	인사팀 및 산학협력단 인정 실적
			산학연계 교육을 위한 산업체 설문조사		
		공공기관, 산업체 등의 자문역, 고문, 위원 등	30%/건	150%	
		대학발전기금 및 산학장학금 유치	100만원 당 × 10%	제한 없음	
		기자재 유치	100만원 당 × 10%	300%	
교내봉사	학교 기여 활동	학교기업 책임자	100%/년	200%	인사팀 및 산학협력단 인정 실적
		보직 수행	부처장급 이상 100%/년 학과장급 이상 70%/년 주임교수급 이상 50%/년		
		산학취업관련 위원회 참여	건 × 10%		
		취업박람회 기업유치	건 × 100%		
		산학관련 언론매체 기고 및 출연	건 × 50%		홍보팀 인정 실적
대학 관련 국책사업 유지 및 운영	10억원 이상/년	책:150% / 참:70%	150%	인사팀 및 산학협력단 인정 실적	
	5억원 이상/년	책:100% / 참:50%			
	1억원 이상/년	책:50% / 참:20%			
	0.5-1억원/년	책:30% / 참:10%			
대학 관련 국책사업 기획 참여	10억원 이상/년	책:50% / 참:30%	50%	인사팀 및 산학협력단 인정 실적	
	5억원 이상/년	책:30% / 참:20%			
	1억원 이상/년	책:20% / 참:10%			
	0.5-1억원/년	책:10% / 참:10%			
공훈실적	국가 포상 및 훈장	150%	200%	인사팀 인정 실적	
	대통령 표창	100%			
	장관표창	70%			
	총장표창	60%			
	기타산학관련 포상	50%			

1. 학회 및 기술활동

가. 산학협력학회, 학과별 산학협력위원회 및 기술 활동

- 학회활동은 산학협력학회 및 산업체 공동세미나만 인정한다.
- 학회활동은 각 항목 내에서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상위 1개 항목만 인정한다.
- 학회활동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 학회활동은 학술지 또는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 학회의 임원은 구체적인 역할이 주어진 경우(예 : 총무이사, 학술이사 등) 및 편집 위원에 만 인정하며, 비상임 임원 및 운영 위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학과별 산학협력위원으로 참여한 실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인정한 실적으로 한다
- 산학협력 엑스포 활동을 하는 교수를 대상으로 건수에 따라 업적을 인정한다.

나. 산업체 외부 특강

- 산업체 외부 특강은 산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방문특강을 실시한 실적을 말한다.
- 산업체 외부 특강의 측정은 산업체 방문특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으로 한다.

2. 가족회사

가. 가족회사 유치

- 가족회사 유치는 대학과 산업체 간의 산학협력 계약 또는 협약 체결을 통해 가족 회사를 유치한 실적을 말하며, 유치에 참여한 교수가 2인 이상인 경우 학부(과)장이 참여 교수의 기여도에 따라 점수를 배부한다.
- 가족회사 유치실적은 산학협력 계약서 또는 협약서 및 학부(과)장 점수 배분서류 등으로 한다.

나. 기업연구소 유치

- 기업부설 연구소를 대학 내에 설치하고 운영되는 실적으로 1학기 이상 지속된 경우에 인정한다.

3. 산학연계

가. 산업체 파견활동(교수 현장학기제)

- 산업체 파견활동은 연구년 또는 방학기간 동안 국내외 기업에서 일정기간 이상 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하여 교무처에서 인정한 실적을 말하며, 기술경영지도와 중복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 산업체 설문조사

- 학생취업 및 학과 연계를 위한 설문을 인정한다.
- 산업수요에 의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을 위한 설문을 인정한다.

다. 공공기관 및 산업체 임원

- 전국,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산업체의 자문역, 임원, 고문, 위원, 사회이사로 위촉된 경우

라. 산학장학금 및 기자재 유치

- 학교에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하며 이에 대한 반영은 교원업적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기자재 유치의 경우 건양대학교에 양도한다는 문서가 있어야 하며 폐기자재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4. 학교기여 활동

가. 학교기업책임자

- 학교기업책임자로 보직을 수행한 교원에 대하여 인정한다.

나. 산학협력단 보직 및 산학협력위원회 활동

- 산학협력단에서 보직을 수행한 교원에 대하여 인정한다.
- 행정보직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상위 1개 항목만 인정한다.
- 산학협력위원회 활동은 본 대학교 규정집에 있는 위원회 또는 총장이 위촉한 위원회 (T/F팀 포함)를 말하며, 상위 1개 항목만 인정한다.
- 산학협력단보직 수행기간 및 위원회 활동은 위촉받은 당해연도의 실적으로 산출한다.
(예) 위촉기간 (2007. 3 - 2008. 2) : 2007년 실적
 위촉기간 (2007. 3 - 2009. 2) : 2007, 2008년 실적
- 임기 기간이 6개월 이상은 100%인정, 6개월 미만은 50%를 인정한다.

다. 취업박람회 기업 유치

- 대학주최 취업박람회를 유치하고 진행하는 교수를 대상으로 건수에 따라 업적을 인정한다.

라. 산학관련 언론매체 기고 및 출연

- 언론매체 기고 및 출연 실적은 합산이 가능하며, 최고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동일 내용을 동시에 여러 언론 매체에 기고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위점수만을 인정한다.
- 언론 매체 기고 및 출연 실적은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신문기사, 동영상 등)만을 근거로 인정한다.

5. 대학 관련 국책사업 유치·운영 및 기획 참여

가. 산학협력을 제외한 대학 관련 국책사업 유치 및 운영

- 다년간 사업일 경우 매년 반영하며 유치자와 참여자에게 비율로 정한범위에서 인정한다.
- 사업규모는 대학의 대응자금 및 현물은 제외한다.
- 2개 이상의 사업 유치 시, 사업 별 취득 점수는 합산 적용한다.
- 집단사업의 경우로 한정하며 한다.

나. 산학협력을 제외한 대학 관련 국책사업 사업계획 참여

- 사업규모는 신청 시 총사업비를 말한다. 단, 대학 대응 자금 및 현물은 제외한다.
- 사업계획을 통하여 사업의 유치가 확정된 경우는 “산학협력관련 사업의 유치” 실적으로 평가 전환한다.
- 최소 1건 이상 집단사업 의무로 한다.

6. 공훈실적

가. 산학협력 관련 교수 수상 실적

- 산학협력 관련 교수 수상 실적은 합산이 가능하며 교수 본인의 수상 실적에 한하여 인정되며, 연구관련 수상은 연구영역에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교내외 수상실적

- 교수 수상 실적은 합산이 가능하며 교수 본인의 수상 실적에 한하여 인정된다.

<별첨 2> 비전임 산학협력교원(산학전문교수) 평가 기준표

영역	세부 평가 항목		배점기준	비고
산학 교육	현장실습 지도		명당 10%(300%)	
	현장견학 인솔		20%/건당 (20명 이상)	
	모의면접 지도		명당 5%(300%)	
	취업 실적		명당 10%(500%)	
	산업체 맞춤형 교과목 개설(코디네이터)		건당 10%(100%)	
	캡스톤디자인 지도		건당 50%(200%)	
	창업 동아리 지도		건당 10%(100%)	
	취업·창업 교육		명당 5%(100%)	
	창업 유도 실적		건당 50%(100%)	
산학 연구	산학협력 관련 사업유치 (국책사업,기관 유치 등)	10억원 이상/년	책:250% / 참:200%	책 : 책임자 참 : 참여자
		5억원 이상/년	책:200% / 참:160%	
		1억원 이상/년	책:150% / 참:120%	
		0.5-1억원/년	책:100% / 참:80%	
	사업기획 참여 (사업계획 입안 및 작성)	30억원 이상/년	책:150% / 참:120%	
		10억원 이상/년	책:120% / 참:100%	
		5억원 이상/년	책:100% / 참:80%	
		1억원 이상/년	책:50% / 참:40%	
	산업체 기술이전/ 개발	기술 이전료	100만원당 25%	
		산업체 애로기술 해결 및 자문	건당 10%	
	산학협력 공동연구	인문사회 : 연구비 수주액	50만원당 10%	
		자연계 : 연구비 수주액	100만원당 10%	
	특허/ 신기술 등	국제특허 / 출원	건당 350% / 100%	
		국내특허 / 출원	건당 200% / 50%	
		실용신안, 의장평가, 프로그램 등록	건당 50%	
		신기술, 신제품인증, 디자인 등록	건당 50%	
기타 지적재산권 등록		건당 30%		
산학 협력 봉사	가족기업 유치 및 관리(협약체결 등)		50%/건(300%)	
	기술·경영자문		20%/회(100%)	
	산업체 방문 특강		20%/회(100%)	
	재정기여	발전기금 및 장학금 유치	100만원당 10%	
		기자재유치		
	학교 보직 수행	센터장급 이상 보직	200%/년	
		기타보직	100%/년	
	교내외 위원회 활동		50%/건(200%)	
산학협력관련 교내외 수상실적		50%/건(300%)		